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근거마련〉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0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우재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0. 21.
3. 회 부 일 : 2024. 10.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새벽,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새벽,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장등이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새벽,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 ----- ----- ----- ----- ----- ----- ----- ----- ----- ----. <u>다만,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새벽,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u>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u>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 -----<u>기준 등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대나 방학기간에도 동일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도로여건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¹⁾을 통해, 2021년 기준

1)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관련 입법영향분석 개요>

- (추진 배경)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는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된 개선과제를 부처에 권고
- (분석 추진 경과) '21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21.12.3.)를 거쳐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선정,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분석 실시(3.18.~9.14.)
- (분석방법) 법적합성과 체계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 규범분석 및 설문조사나 통계분석 등을 통한 실태분석을 병행 실시(실태분석에 중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총 523건의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건도 없었던 심야시간대(00:00~06:00)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실행 가능성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제의 탄력적 적용 여부 검토를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음.²⁾

개정안은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기·시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행법의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은 임의 규정³⁾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반 사항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개정 실익이 적고,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걸쳐

2) 보호구역의 지정은 시장등이 자동차 통행량 및 어린이 수 등을 조사하여 지정하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개별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정함(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3)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 ⑤ (생략)

제17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2. 시·도 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마련된 결과물로, 규제 완화로 인해 자칫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현재('24. 12. 기준) 경찰청은 일률적인 속도제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중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등하교 등 사고 취약시간에는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은 상향 조치하는 등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달리 정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전국 43개소(구간)에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 확대할 계획임.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 자료>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시행('23.8월)」

- (개요) 보호구역 중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등하교 등 사고 취약시간에는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은 상향 조치

구분	평상 시	가변 시	추진 내용
속도 상향	30~40km/h	40~50km/h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20~07시) ※ 변동 가능
속도 하향	40~50km/h	30~40km/h	등하교 등 사고 취약시간대 (07~09시 / 12~16시) ※ 변동 가능

- (운영현황) 보호구역 중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43개소('24.12월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간제 속도 제한	43	5	1	1	3	6	1	1	3	1	12	2	1	2	2	1		1
전일제 속도 상향	17				2										1	5	9	

- (사고현황)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및 과속 단속 현황

구분	교통사고						단속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과속(건)
	전체	과속	전체	과속	전체	과속	
2019	521	0	6	0	529	0	1,464,393
2020	458	3	3	0	471	3	1,597,343
2021	496	3	2	0	513	3	3,413,290
2022	489	2	3	0	495	2	5,013,133
2023	443	1	2	0	458	1	5,264,042

※ 2024년 교통사고 및 단속 통계는 아직 미확정